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11호
2. 발 의 자 : 김정태 의원외 10명
3. 발의일자 : 2020. 2. 5.
4. 회부일자 : 2020. 2. 12.

## II .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를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추가 함(안 제5조제 5호).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김정태 의원 등 11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1311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sup>
-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5호는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사항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지역과 주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참여,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자원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보다 직결되어 있는 행정 조직으로 지역 내 주민들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주민 참여 수단인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등 지방자치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주민 밀착 행정 수요의 증대 등으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방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자치권 및 자주자원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지방분권의 흐름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 특히,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금년부터 만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학생(고3)들이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의 이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용어의 불명확함과 의미 중복을 이유로 안 제 5조제5호의 '지방자치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권리 및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분권'의 정의에 대해<sup>2)</sup>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용어의 의미 차이 또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